

SFC vs. Vizio 판결 파헤치기

2022. 9. 21.

삼성전자 오픈소스그룹

정윤환 변호사

배경

- **판결 선고**

- 2022. 5. 13.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**연방지방법원**에서 SFC가 Vizio를 상대로 제기한 오픈소스 관련 소송의 판결 선고

- **SFC 성명 발표**

"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사건이며,
GPL이 저작권 라이선스 뿐 아니라 계약적 합의의 기능도
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"

사실관계

▪ 당사자

- 원고 : SFC (Software Freedom Conservancy, Inc.)
- 피고 : Vizio (Vizio, Inc.)

▪ 사실 관계

- 2018.8. SFC는 Vizio가 GPL로 배포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, Vizio 측에 관련 서한을 발송
- Vizio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였으나 컴파일 가능한 형태가 아니었고, 이에 SFC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2020년 1월 이후 6차례의 메일에 대해 불응
- 2021년 10월, SFC는 SFC는 Vizio 제품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여전히 적절한 소스코드 또는 Written Offer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 제기

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

· 소송의 경과

- SFC, 최초 캘리포니아 주법원(State Court)에 소 제기
- Vizio, 연방법원(Federal Court)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
- SFC, 이를 주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

※ 미국 법원의 이원화 체계

-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사건을 관장
- 연방법원 : 연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건 (ex. 헌법, 군법, 지식재산법, 안보법 등)
- 주법원 : 개인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 (ex. 가족법, 부동산법, 계약법, 형법 등)

· 법원의 판결

- "원고(SFC)의 주장이 저작권법에서 다루는 범위 내의 권리라면 연방법원 관할이 되지만, SFC가 주장한 제3자 수혜자로서의 권리와 소스코드 공개 의무 등은 저작권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법원으로 환송한다."

쟁점 (1/3)

(1) GPL 위반이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

- GPL 위반을 저작권 침해로 본다면 연방법원, 민법상 계약 위반으로 본다면 주법원 관할
-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주법원으로 보냈으니, GPL 위반은 저작권 침해일 뿐 아니라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
- 다만, 연방법원은 관할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, 본안 판단은 아직 하지 않았음

※ 저작권법 vs. 계약법

- 일반적으로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함
-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경우 국가/주 별로 계약법이 달라 계약 성립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, 계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, 원칙적으로 금전적 손해배상만 가능
- 저작권법은 국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되고, 저작물의 사용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며, 침해의 정지나 명예회복 등 금전적 손해배상 외의 구제방안 존재

※ 그런데...본 건에서 SFC는 계약 위반을, Vizio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음...

쟁점 (2/3)

(2)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GPL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

- SFC는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임 받은 것이 아니고, 오픈소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
- 저작권 위반으로 볼 경우, 원고적격 無 → 각하
- 계약 위반으로 볼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원칙
- SFC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이익에 직접 관여된 자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“제3자 수혜자 (Third-party beneficiary)” 임을 주장 중

쟁점 (3/3)

(3) 소스코드 공개 청구가 가능한지

- SFC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, Vizio의 소스코드 공개 청구
-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손해배상
- 소스코드 공개와 같이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"특정이행(Specific Performance)"
- 저작권법상으로 침해를 중단해 달라는 금지청구는 가능하나 **특정이행 청구는 불가능**, 계약법상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 적용 가능

시사점

▪ 시사점

- 이번 판결은 오직 연방법원에 관할이 있는지만 판단한 것
- 일반적으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는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데, 본 사건은 원고가 계약 위반임을 주장
- 저작권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
- SFC는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뿐 여러 쟁점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음
- 다만, SFC의 주장이 인정된다면, 소비자(오픈소스 사용자)의 권리가 확대되는 반면,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

감사합니다.